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4605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0271	최수진의원	2024.6.10.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8.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2		2210539	조지연의원	2025.5.1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2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으로,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8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출연”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금의”를 “출연금·보조금의”로, “등에”를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ㆍ상환 방법 등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원사업에 관하여”를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하여”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판매ㆍ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출연금·보조금의 ---------- 및 융자·보증의 대상·조건, 절차·상환 방법 등에----------.

제11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생 략) 1.~ 5. (생 략)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1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생산·판매·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생 략)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기술보증기금----------. ③·④ (현행과 같음)